

특별회의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기후위기 시대 인권의 문제, 왜 국가의 책임인가?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재산권 등 인권을 침해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환경이 파괴되고, 산불이나 홍수로 재산을 잃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 기후위기는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등 평등권도 침해한다.

■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다. 온실가스는 전 세계에서 배출되고 있고,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위험은 전 지구적이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다.

■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과 국내법적 구속력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으며,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에 가입하여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당사국이다. 위 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농도를 기후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선택에 따라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어 파리협정은 2016. 12. 3. 국내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 형태로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파리협정 제2조 제1항). 파리협정에 의하여 한국은 ① 5년 주기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②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고, ③ 투명성 기제에 따른 보고 의무가 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실질적인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법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하도록 요구한다.

■ 국가의 책임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인한 기후변화와 개인의 생명, 건강, 환경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 독일, 네덜란드 판례에서 확인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보호법이 2030년까지는 연도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정 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 기후중립이 완성되는 2050년 기간에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들인 청구인들이 2031년 이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감축의무를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 및 제4조 제3항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국가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기본법 제20a조에 따르는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측면으로부터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네덜란드 대법원(Urgenda 판결)은 네덜란드 정부가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명하였다. 국가는 자신의 책임의 몫에 비례하여 자신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고, 네덜란드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기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유럽인권협약 제2조(생명권 보호) 및 제8조(사생활 및 가정생활 존중)에 기반한다고 판시하였다.